

 신안산대학교	장학 규정	규정 번호	2-5-2
		제정 일자	1995. 3. 14.
		개정 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입학학생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건전한 학풍 수립과 학구열의 고취로 우수한 재능을 갖추거나 또는 생활이 극빈한 학생이 학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대상)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제3조(장학운영 및 보존) ① 장학종별, 장학금액 및 장학인원은 매 학기별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장학에 대한 전산데이터는 준영구 보관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유발생 후 해당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복학생, 재입학생, 전과생 (당해학기 학과추천 장학금에 한함)
2. 학사경고 및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았던 자
3. 미등록자 <2023. 2. 23. 개정>
4.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12학점 미만 신청자 <2023. 2. 23. 개정>
5.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단, 예외로 적용되는 장학금은 장학규정 시행세칙의 별표 1에 따로 정한다) <2023. 2. 23. 신설>

제6조(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3. 2. 23. 개정>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단, 예외로 적용되는 장학금은 장학규정 시행세칙의 별표 1에 따로 정한다.) <2023. 2. 23. 개정>
2. 교내장학생의 장학종별 세부 선발기준은 장학규정시행세칙 제8조에 따른다. <2023. 2. 23. 개정>
3.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②항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인정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정한다.

② <2023. 2. 23. 삭제>

③ <2022. 8. 11. 신설> <2023. 2. 23. 삭제>

제7조(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환조치) ① 장학금 수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수령한 장학금은 반환조치 한다.

1. 휴학 또는 제적된 자. 단,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제외한다.
2.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②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3. 2. 23. 개정>

제8조 <삭제>

제9조(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학과추천 장학금은 제외한다. <2023. 2. 23. 개정>

② 학과 추천 장학금은 제6조 선발기준에 의거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장학순위를 결정하고 장학 주관부서로 추천서를 제출한다. <2023. 2. 23. 개정>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로 적용하는 장학금은 장학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2023. 2. 23. 신설>

제10조(부대조건) ①<삭제>

② 장학금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관례에 따른다.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장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학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2023. 2. 23. 개정>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2023. 2. 23. 삭제>

제3장 장학금

제14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5조(종류)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등록금 지원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 외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규정시행세칙의 (별표 1)을 참고한다. <2023. 2. 23. 개정>

② 교외장학금은 국가(공공)기관, 외부장학재단, 기업체 및 개인 등이 장학대상자를 지명하거나 선정 의뢰하여 지급하는 장학으로 한다. <2023. 2. 23. 개정>

③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과 국가장학금 II유형이 있다. <2023. 2. 23. 개정>

제16조(교외장학) 교외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해당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거나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장학금 지급 기관(단체, 개인 등)에서 대학에 학생의 선발을 의뢰할 경우 별도의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하며,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학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2023. 2. 23. 개정>

이 규정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만, 제6조와 제7조, 제8조, 제10조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발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11.>

이 규정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별표 1]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별표 1]의 전공심화과정특별(만학도), 특별(만학도)신입생, 특별장학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규정 제6조 및 장학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 기준

1. 등록금 지원 장학금

가. 일반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학과 추천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SAU최우수	등록금 전액	학년별 1명씩 배정 (단, 학년별 재학생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선발 제외)		학년별 수석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SAU수석	200만원	◇ 정규과정 ○ 학년별 각 1명씩 선발 ※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가능	◇ 전공심화 / 산업체위탁과정 ○ 학년별 각 1명씩 선발 ※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가능	1. 학업성적 우수 2. 가정형편 3. 학과 기여도	
	SAU진리	170만원	▶ 학년별 인원수가 70명 이상일 경우 각 2명씩 선발	▶ 학년별 인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		
SAU박애	140만원	▶ 학년별 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	▶ 학년별 인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			
		▶ 학년별 인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				
다문화	70만원	▶ 부모 중 1인 이상 외국국적인 학생 ▶ 외국국적인 부모 중 1인 또는 본인이 귀화한 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초지	등록금 전액	전임이상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없음		
화목	70만원	직계존비속 및 부부, 형제, 자매, 남매 인 재학생				
주경	50만원	산업체위탁, 협약반에 재학 중인 자(2022년까지 입학자)				
안산시 산업체노동자	등록금 20%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수혜자				
공무원	등록금 30%	공무원, 군무원, 부서관 및 경기도내 전문대학교 직원인 자				
전공심화과정 특별	등록금 30%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중인 자		없음		
전공심화과정 특별(만학도)	본인부담액 50%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입학예정) 중인 자로 아래기준에 충족하는 자 - 만 30세 이상인 자 - 국가장학금 신청자(미신청자 제외) - 재학기간 중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				
복지	1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외국인	100만원	외국국적을 가진 순수외국인인 자(단, 학칙시행세칙 제50조에 의한 유급자는 제외)				직전학기 2.0이상
장애학생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없음
국가유공자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없음		
	등록금 5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손)자녀				직전학기 70점이상
청솔	별도책정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교 및 학과활동에 기여한 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없음		

나. 특별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특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SAU사랑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근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없음
특별(만학도)	본인부담액 50%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만 30세 이상(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미신청자 제외) ▶재학기간 중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 ▶2024학년도 입학한자부터 적용(국가장학금 신청기준은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		
특별(산업체위탁)	등록금 50%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023년 이후 산업체위탁 과정 입학자)		
특별(만학도) 신입생	등록금 전액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만 30세 이상 ▶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미신청자 제외) ▶재학기간 중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 ▶재학기간별 장학금액 별도운영 ▶2024학년도 입학한 자부터 적용 ▶2학년부서는 특별(만학도)기준으로 적용	없음	없음
특별(재난)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부담 완화 목적)	없음	

2. 등록금 외 지원 장학금(생활비 / 대가성)

가. 일반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공로	가. 총학생회	등록금전액	총학생회장	12학점 이상	직전 학기 2.0이상
		200만원	부총학생회장		
		180만원	국장		
	나. 과대표	160만원	학과대표 (신설 및 폐학과는 장학금액의 50%만 지급)		
부속기관	120만원	방송국 : 실무국장 / 학보사 : 편집장	없음	직전 학기 70점이상	
	100만원	방송국 : 총무 / 학보사 : 부편집장, 총무			
	80만원	방송국 : 정국원 / 학보사 : 정기자			
	50만원	방송국 : 수습국원 / 학보사 : 수습기자			
장애학생도우미	별도책정	장애학생도우미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자	없음	직전 학기 2.0이상	
국가근로장학	별도책정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하는 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2.0이상	
학과·행정부서 봉사장학금	별도책정	학과·행정부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하는 자			

나. 특별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특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재난)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부담 완화 목적)	없음	없음
특별(긴급지원)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공로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장학	별도책정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등록금한도(계절학기포함)		

[별표 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장학금 반환 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